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27호 2023. 3. 23.(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458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사천시 공고 제2023-468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사천시 공고 제2023-475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양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20
- 사천시 공고 제2023-483호 국유재산(공유수면) 무단 점유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7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공고 제2023-458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 → 제1조의3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2570, FAX: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
→ 제1조의3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3. 23. ~ 2023. 4. 1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재직중</u>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4. (생략)</p> <p>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u>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u></p>	<p>제1조(목적) ----- <u>재직 중</u> ----- ----- ----- ----- ----- -----.</p> <p>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 ----- ----- ----- -----.</p> <p>----- 「<u>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u>」 제1조의3제1호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① ----- ----- ----- <u>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u> ----- ----- ----- -----.</p>

<p>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u>소속공무원</u>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 <u>소속 공무원</u>----- ----- ----- -----.</p>
--	--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공고 제2023-468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따른 사용료 인상시기는 2024년 7월로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202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 인하(별표 2)

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4년 7월로 유예(별표 2)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52530 , 주소: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831- 5541, FAX: 831- 6062)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 사용료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따른 사용료 인상시기는 2024년 7월로 유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202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 인하(별표 2)

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4년 7월로 유예(별표 2)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 ~ 2023.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6)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에 따른 하수도공기업 수입 감소(안 별표 2)

나. 비용추계의 결과

- 1) 추계의 전제: 2022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사업비		-946,435	-862,403	-	-	-	-1,808,838
	소계(a)		-946,435	-862,403	-	-	-	-1,808,838
세입	사용료		-946,435	-862,403	-	-	-	-1,808,838
	소계(b)		-946,435	-862,403	-	-	-	-1,808,838

다. 부대의견: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윤 식 (인)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946,435	862,403	-	-	-	1,808,838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46,435	862,403	-	-	-	1,808,838
	지방세	946,435	862,403	-	-	-	1,808,83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년간 사용료 인하분 18억 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요청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윤 식 (인)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개정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원)

업종	구간(m ³)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m ³ 당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용	1~500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m ³ 당	808	962	1,145	1,363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공고 제2023-475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양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안)

건설부 고시 제2882호(1966.10.18.)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1-180호(2021.7.1.)로 최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양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붙임참조
2. 열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또는 도시과
4. 관계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또는 도시과(☎055-831-31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붙임)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수양공원	근린 공원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72번지 일원	63,103	증)511	63,614	1966.10.18 건설부고시 제2882호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변경)

시설의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63,103	63,614	100.0	100.0	228.9	228.9	429.72	429.72	증:511
시 설 면 적	21,236	22,392	33.7	35.2	228.9	228.9	429.72	429.72	
도로 및 광장	6,961	6,961	11.0	10.9	-	-	-	-	
조 경 시 설	3,648	3,648	5.8	5.7	-	-	-	-	
휴 양 시 설	1,446	1,446	2.3	2.3	-	-	-	-	
유 희 시 설	976	2,132	1.6	3.4	-	-	-	-	증:1,156
운 동 시 설	1,076	1,076	1.7	1.7	-	-	-	-	
교 양 시 설	4,619	4,619	7.3	7.3	165.94	165.94	366.76	366.76	
편 익 시 설	905	905	1.4	1.4	62.96	62.96	62.96	62.96	
공원관리시설	1,605	1,605	2.6	2.5	-	-	-	-	
녹 지 및 기 타	41,867	41,222	66.3	64.8	-	-	-	-	감:645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시설별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로 및 광장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	6,961	6,961	-	-	-	-	
-	도로	6,495	6,495	-	-	-	-	
1	광장 선인리 583	466	466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나) 조경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경시설		3,648	3,648	-	-	-	-		
2	잔디광장	정의리212-2	1,608	1,608	-	-	-	-	
3	분수대	선인리582	323	323	-	-	-	-	
4	연못1	선인리579-1	637	637	-	-	-	-	
5	연못2	선인리579-6	634	634	-	-	-	-	
6	화훼원	선인리503	446	446	-	-	-	-	

다) 휴양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1,446	1,446	-	-	-	-		
7	전망쉼터	정의리212-1	369	369	-	-	-	-	
8	휴게쉼터1	정의리150	955	955	-	-	-	-	
9	휴게쉼터2	선인리580-2	122	122	-	-	-	-	

라) 유희시설 (변경)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희시설		976	2,132	-	-	-	-		
22	어린이놀이터1	정의리150	976	976	-	-	-	-	
22-1	어린이놀이터2	선인리612	-	1,156	-	-	-	-	신설

마) 운동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1,076	1,076	-	-	-	-		
10	게이트볼장	선인리579-2	1,076	1,076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바) 교양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시설	-	4,619	4,619	165.94	165.94	366.76	366.76		
11	침오정	선인리581-1	1,480	1,480	66.94	66.94	267.76	267.76	
12	수양루	선인리580-2	326	326	54	54	54	54	
13	야외무대	선인리580-2	422	422	-	-	-	-	
14	생태학습장	선인리503	2,346	2,346	-	-	-	-	
15	사적비	선인리580-2	45	45	45	45	45	45	

사) 편익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	905	905	62.96	62.96	62.96	62.96		
16	주차장	선인리614-1	710	710	-	-	-	-	
17	화장실1	선인리580-2	156	156	36.96	36.96	36.96	36.96	
18	화장실2	정의리212-1	39	39	26	26	26	26	

아) 공원관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관리시설	-	1,605	1,605	-	-	-	-	-	
19	배수지	정의리148-2	1,605	1,605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자) 녹지 및 기타 (변경)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및 기타	-	41,867	41,222	-	-	-	-	감:645
21-1	녹지1	정의리175	10,439	9,794	-	-	-	감:645
21-2	녹지2	선인리583	3,698	3,698	-	-	-	
21-3	녹지3	정의리212-1	3,785	3,785	-	-	-	
21-4	녹지4	선인리506	3,459	3,459	-	-	-	
21-5	녹지5	선인리212-1	2,446	2,446	-	-	-	
21-6	녹지6	선인리212-1	2,924	2,924	-	-	-	
21-7	녹지7	선인리212-1	1,284	1,284	-	-	-	
21-8	녹지8	선인리212-1	1,622	1,622	-	-	-	
21-9	녹지9	선인리212-1	1,757	1,757	-	-	-	
21-10	녹지10	선인리580-2	3,140	3,140	-	-	-	
21-11	녹지11	선인리579-5	3,502	3,502	-	-	-	
21-12	녹지12	선인리580-2	538	538	-	-	-	
21-13	녹지13	선인리580-2	924	924	-	-	-	
21-14	녹지14	정의리214-2	2,349	2,349	-	-	-	

2) 세부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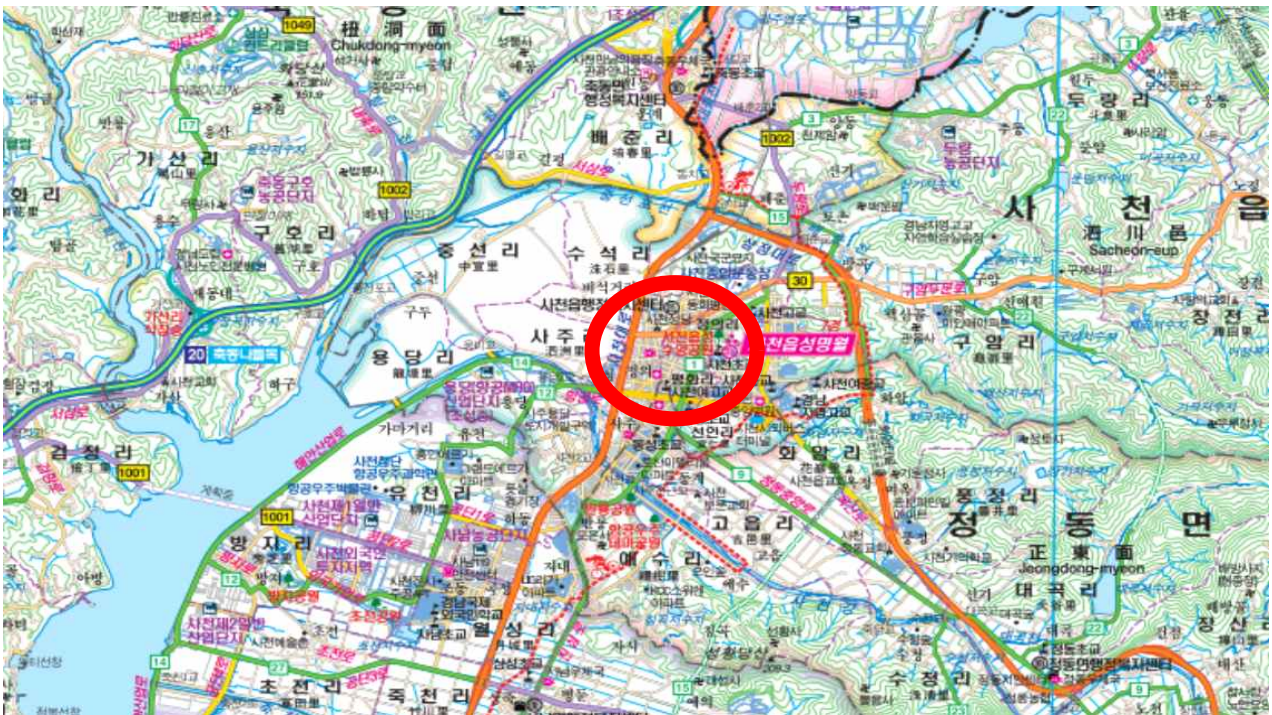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1,927	6,495				
기정	소로	3	1	5	460	2,248	산책로	구역계	광장	
기정	소로	3	2	4	163	681	산책로	구역계	광장	
기정	소로	3	3	4	68	276	산책로	주차장	광장	
기정	소로	3	4	4	260	1,040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기정	소로	3	5	5	116	595	산책로	구역계	광장	
기정	소로	3	6	2.5	144	361	산책로	소로3-2	소로3-4	
기정	소로	3	7	4	58	23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기정	소로	3	8	2	83	175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기정	소로	3	9	2	108	215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쉼터	
기정	소로	3	10	2	56	11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기정	소로	3	11	1.1	33	37	산책로	소로3-6	소로3-2	
기정	소로	3	12	1.2	116	151	산책로	소로3-7	소로3-9	
기정	소로	3	13	1.2	80	104	산책로	소로3-7	소로3-12	
기정	소로	3	14	1.5	167	251	산책로	소로3-12	전망쉼터	
기정	소로	3	15	1.1	15	17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6	

사천시공보

제827호

위치도

■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12번지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입안명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수양공원)] 결정(변경)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12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안에 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27호

사천시 공고 제2023-483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국유재산(공유수면) 무단 점유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3. 23. ~ 2023. 4. 6.(14일간)
- 공고대상

해당지번	성명	주소	반송일	반송사유	내 용	비고
사천시 곤명면 흥신리 954	강*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흥신로	2022. 3. 20.	폐문부재	국유지 무단 점유 원상회복	

- 문의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55-831-3260)

2023. 3. 23.

사 천 시 장